【 별지 제1호 서식(제14조 제1항 관련) 】

토지 등의 매도 신청서

토지 등의 소유자	① 성명			②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③ 주소					
신 청 내 용	④토지 소재지	⑤지번	⑥지목	⑦면적 (m^2)	토지 외의 물건	
					⑧종류	⑨등기설정여부
	토지 등에 설정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⑩권리의 종류		⑪권리의 내용		⑫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토지 등을 매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토지 등의 소유자 (서명 또는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구비서류(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1~4번은 부동산종합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건축물현황도는 별도 제출)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1부.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4.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포함) 1부.
5.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허가· 신고 서류(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등)
6. 기타 당해 토지 등의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영업허가관련서류, 지하수 준공확인증, 농지원부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작성방법〉

①~③란 : 토지 등의 소유자 성명, 연락처, 우편물 수령 가능한 주소 기입

④~⑦란 : '리'단위까지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고, 지번, 지목, 면적을 정확히 기입

⑧~⑨란 : 건축물, 시설하우스, 관정 등 토지 외의 물건 종류와 등기부등본 등재 설정여부 기입

⑩~⑫란 :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내용, 권리자 기입(해당자만 작성)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이용 미동의시에는 주민등록등록표(초본),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 이용·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전자정부법」 제42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수집·이용목적) 토지등의 매수절차 통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유·이용기간) 신청서 및 관련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절차 추진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날인)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 토지등의 매수절차 추진을 위한 실명 확인, 토지등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매매대금 지급

○ **(수집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신청서 및 관련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절차 추진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날인)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처리 지침'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및 변호사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토지등의 감정평가 실시를 위한 실명확인, 토지등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매매대금 지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기한 완료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절차 추진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날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42조) 〉

○ (공동이용의 목적) 토지 매수 계약체결 및 등기권리 이전 등에 이용

○ (공동이용의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법원, 관할 시·군·구 등

위 사항을 숙지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날인)

【 별지 제2호 서식(제14조 제1항 제6호 관련) 】

토지 거래 약정서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매도신청 토지 등 :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외　　필지

(토지　　필지　　㎡, 건물　　동　　㎡)

상기 본인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위 토지 등의 매도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1. 토지 등의 매도가격은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감정평가대상 토지 및 시설물의 범위 내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른다.
2. 지침 제22조 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추천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지침 제25조 제4항에 따라 매도철회한 이후 토지매도 재신청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3. 매도신청한 토지 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본인이 폐기물 처리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4. 매도신청한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한다.

년　　월　　일

약정인 :　　(서명 또는 인)

금강유역환경청장 귀하